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업무능력과 성과가 뛰어난 소방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승진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사승진과 특별승진을 확대하고, 경력평정 만점 도달기간을 단축하며, 승진대상자명부에 반영되는 경력평정 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역량있는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승진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단축하고, 승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 승진대상자명부 순위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를 “심사승진임용은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60퍼센트, 시험승진임용은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4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경우에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를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4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3년”을 각각 “2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2년”을 각각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나목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제3호·제5호”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제5호·제6호”로 한다.

제9조제4항제1호가목 중 “4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목(중전의 라목) 중 “소방사:”를 “소방교·소방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나

목 중 “5년간”을 “4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4년간”을 “3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1년 6개월간”을 “1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목(종전의 바목) 중 “소방사:”를 “소방교·소방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를 “7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로, “6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를 “70퍼센트, 경력평정점 15퍼센트”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그 승진임용인원은 각 5할”을 “승진임용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하고, 4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안분하여 임용하되”를 “임용하되”로 한다.

제3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와 최종합격자의 수가 같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를 “승진대상자명부 순위가 높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1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이상이 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 이상(제2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이고, 제6조에 따라”로, “아니한 자 중에서 행한다”를 “않는 사람 중에서 실시한다”로 한다.

제42조제3항 중 “제38조제2항”을 “제3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4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4조제2항, 제4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4조제2항, 제4조제4항 및 제27조제1항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① (생략) ② 「소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심사승진임용과 시험승진임용을 병행하는 경우에 그 승진임용방법별 임용비율은 계급별로 <u>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각 50퍼센트로 한다.</u>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u>소방위</u>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를 정하는 <u>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u>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u>다음 각 호의 비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u> 1. 소방위로의 특별승진임용 예	제4조(승진임용 구분별 임용비율과 승진임용예정 인원수의 책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심사승진임용은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60퍼센트, 시험승진임용은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40퍼센트</u>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소방경</u> ----- ----- <u>경우에는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예정인원수의 30퍼센트 이내</u> ----- -----. ----- ----- <u>본문</u> ----- -----. <삭 제>

<u>정 인원수: 소방위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의 15퍼센트 이내</u> 2. 소방장 이하 계급으로의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수: 해당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예정 인원수의 20퍼센트 이내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 소방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소방정: <u>4년</u> 2. 소방령: <u>3년</u> 3. 소방경: <u>3년</u> 4. 소방위: <u>2년</u> 5. 소방장: <u>2년</u> 6.·7. (생략)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삭 제> 제5조(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① ----- ----- -----. 1. ---- <u>3년</u> 2. ---- <u>2년</u> 3. ---- <u>2년</u> 4. ---- <u>1년</u> 5. ---- <u>1년</u> 6.·7.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제3호·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제3호·제5호·제6호 ----- ----- ---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9조(경력평정) ① ~ ③ (생 략)	제9조(경력평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경력은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으로 구분하며, 계급별 기본경력과 초과경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 ----- ---
1. 기본경력	1. -----
가. 소방정·소방령·소방경: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4년간	가. ----- ----- 3년 간
나. 소방위·소방장: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3년간	나. ----- ----- 2년간
다. 소방교: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2년간	<삭 제>
라. 소방사: 평정기준일부터 최근 1년 6개월간	다. <u>소방교·소방사</u> : ----- -
2. 초과경력	2. -----

가. 소방정: 기본경력 전 3년간	가. ----- 2년 간
나. 소방령: 기본경력 전 5년간	나. ----- 4년 간
다. 소방경·소방위: 기본경력 전 4년간	다. ----- --- 3년간
라. 소방장: 기본경력 전 1년 6개월간	라. ----- 1년 간
마. 소방교: 기본경력 전 1년간	<삭 제>
바. 소방사: 기본경력 전 6개월간	마. <u>소방교·소방사</u> :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제11조(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①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소방정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30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0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소방령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점 60퍼센트, 경력평정점 25퍼센트 및 교육훈련성적평정점 15퍼센트의 비율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① ----- ----- --- 70퍼센트, 경력평정점 20퍼센트 ----- ----- ----- 70퍼센트, 경력평정점 15퍼센트 --- ----- ----- ----- ----- -----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점해야 한다.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제27조(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등)
①심사승진후보자와 시험승진후보자가 있을 때에는 <u>그 승진임용인원은 각 5할로 한다.</u>	① ----- <u>승진임용인원의 60퍼센트를 심사승진후보자로 하고, 40퍼센트를 시험승진후보자</u> ---.
②소방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순위에 따라 <u>안분하여 임용하되</u> , 각 후보자명부에 등재된 동일 순위자를 각각 다른 시기에 임용할 경우에는 심사승진후보자를 우선 임용하고 시험승진후보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진후보자는 심사승진후보자 및 시험승진후보자에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 ----- <u>임용하되</u>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 ④ (생 략)	제34조(시험의 합격결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u>시험승진임용예정 인원수와 최종합격자의 수가 같을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u>	⑤ ----- ----- ----- <u>승진대상자명부 순위가 높은</u> ----- ----- -----.
1. <u>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총평정점이 높은 사람</u>	<삭 제>
2. <u>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u>	<삭 제>
3. <u>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u>	<삭 제>
4. <u>소방공무원으로 장기근무한 사람</u>	<삭 제>
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 등) ① (생 략)	제41조(최저근무연수의 적용배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은 <u>당해 계급에서의 근무기간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이상</u> 이 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이 제한되지 <u>아니한 자</u> 중에서 행한다.	②----- ----- <u>해당 ----- 제5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의 3분의2 이상(제2호의 경우에는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u> 이고, 제6조에 따라 --- <u>않는 사람</u> 중에서 실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특별승진심사) ①·② (생 략)	제42조(특별승진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38조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특별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3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운영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7044